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74725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4. 20.

판결 선고2017. 5. 1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6,179,056원 및 그 중 275,603,824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1.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5. 3. 2. 접수 제62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21. 피고 A과 사이에 피보증인 피고 A,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11. 21.부터 2016. 11. 1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11. 21.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 A의 기한이익 상실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은 2015. 7. 3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8.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액 275,603,824원(=원금 270,000,000원+이자 5,603,824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구상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로서 2015. 11. 5. 대지급금 575,232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차용금 채무 및 대물변제

피고 A은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C로부터 2013. 11. 11. 2,000,000원, 2014. 3. 20. 10,000,000원, 2014. 10. 10. 3,600,000원, 2014. 12. 1. 6,000,000원 합계 21,6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A은 2015. 1. 7. 위 차용금을 2015. 2. 2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분'이라 한다)을 C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결국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2. 27. 위 차용금으로 매매대금을 갚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5. 3. 2. 접수 제6267호로 2015. 1. 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출한 276,179,056원(=보증채무액 275,603,824원+대지급금 575,232원) 및 그 중 보증채무액 275,603,824원에 대하여 그 변제일인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6. 5.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에서 살펴볼 피고 A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5. 7. 31.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5. 11. 18.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C가 피고 A에게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21,6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 A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지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일 뿐이고 피고 A과 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피고 A의 무자력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 1,352,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 A이 소유한 부동산과 각 기준시점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1	토지	경기도 여주시 D	12,540,000원	2015.1.7.	감정평가서 제2민
(소장 별지 제1목록 제1항 부동산)					
2	토지	경기도 여주시 E	979,800원		
야13,614m ² 중 지분 13614분의 213 (소장 별지 제1목록 제2항 부동산)					
소계	13,519,800				
3	토지	경기도	579,833,400원	2015.6.	감정평가서

1	토지	경기도 여주시 D	12,540,000원	2015.1.7.	감정평가서 제2면
		화성시 F		10.	제3면
(소장 별지 제2목록 제1항 부동산)					
4	건물	경기도 화성시 F	93,258,000원		
(소장 별지 제2목록 제2항 부동산)					
5	토지	경기도 화성시 G	5,136,000원		
(소장 별지 제2목록 제3항 부동산)					
6	토지	경기도 화성시 H	105,980,400원		
(소장 별지 제2목록 제4항 부동산)					
7	토지	경기도 화성시 I	8,089,200원		
(소장 별지 제2목록 제5항 부동산)					
합계	810,297,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소유했던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액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15. 6. 10. 당시 가액의 합계가 810,297,000원에 불과한 데에 반하여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1,352,000,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이 사건 토지 및 지분을 피고 B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는 통모 여부에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에 관한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이고은

판사송인석

별지